

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-327호

「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「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」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12월 18일

금융위원회

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사전예고

1. 제정 이유

금융위원회 내 법제절차의 수행, 규정 제·개정 사전예고, 법률자문 등 기존 규정의 법제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, 법령 제·개정 관련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며, 기존 규정 내용 이외에 행정규칙 발령·관리, 자체 법제심사 등에 내용도 신설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법제절차 규정 개선(안 제3조~18조)

입법계획의 수립부터 법령안의 국회제출까지 법령 제·개정 단계별로 필요 절차와 규제과·소관과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

나. 행정규칙 관리규정 체계화

금융위원회 소관 훈령·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·개정 절차, 발령에

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(안 제19조~제24조) 행정규칙 제·개정시 사전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규정(안 제20조)

다. 행정규칙 관리규정 체계화(안 제6조)

법령·행정규칙 입안시 법적합성, 체계상 오류 등에 대한 법무 총괄 부서인 규제과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 규정

라. 행정규칙 관리규정 체계화(안 제25조제2항)

법령해석 요청 사항이 다른 부처 관련 사항을 포함한 경우 등에 법 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규정

3. 의견제출

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8년 1월 8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, 전화 : 02-2100-2805, 팩스 : 02-2100-2777, 이메일 : jinwoongkwon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